

계약학과 등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제16장의 규정에 의거 계약에 의한 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과정) 계약학과 등에는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한다),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한다)을 둔다.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 ① 계약학과 등의 명칭, 학생 정원 및 학위명은 학칙[별표1-1]과 같다.<개정 2016.5.27>

②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산업체등의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산업체는 본 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으로 하되, 그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인(사업주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한다).<개정 2016.5.27>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5조의 3차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신설 2016.5.27>

②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제2장 입학

제5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 등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하며 단,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는 이전의 대학교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한자, 또는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편입자격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2. 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입학일 기준)<신설 2016.5.27>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차계약에 의해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9개월미만 근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신설 2016.5.27>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등에서 추천한 소속지원 중 선발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 선발하되 산업체 희망시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한다.<항신설

2013.12.4.><개정 2016.5.27>

③ 제2항의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을 첨부하고, 산업체(사업장)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항신설 2013.12.4.><개정 2016.5.27>

④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항신설 2013.12.4.><개정 2016.5.27>

제6조(학생의 선발) ① 계약학과 등의 입학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선발고사를 행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일부과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1. 서류전형<호신설 2016.5.27.>

2. 필답고사

3. 면접고사

4. 신체검사<호신설 2016.5.27.>

5. 실무경력 등<호신설 2016.5.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예원예술대학교 입학(편입학 포함)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필요에 따라 산업체 등과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선발 할 수 있다.

제3장 학기·수업

제7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로 한다.

제8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수업) ① 수업은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등에 의하되, 산업체등과 협의하여 산업체의 실험실 또는 교육시설 등의 산업체 소유시설 중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로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출석수업 비중은 50%이상으로 한다.

② 산업체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4>

제4장 교육과정·이수·수료·수업연한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이수)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교육과정을 년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개정 2016.5.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과목을 이수한다.

③ 계약학과 강좌는 이미 개설된 강좌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개설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 등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수료학점 및 수업연한) 계약학과 등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 및 수업연한은 본 대학교 학칙에 준한다.

제13조(외국어시험) 해당과정 입학(진학) 후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기관에서 실시한 외국어과목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얻은 학생에게는 석사학위 논문 제출자격시험을 면제할 수 있으며,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5장 계약학과 운영·관리 등

제14조(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기간) ① 설치·운영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전문대 3학년 과정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편입과정은 1년으로 할수 있다.<개정 2016.5.27>

②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 또는 유사한 학과·학부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교학지원처와 사전 협의 후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을 정하는 경우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항신설 2013.12.4>

제15조(계약학과 등의 운영) ① 계약학과 등의 운영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 또는 유사한 학과·학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별도의 학과를 운영하여야 할 경우는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계약학과 등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별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도 있다.

제16조(계약학과 등의 운영경비 및 부담) ①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6.5.27>

②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로부터 직접 납부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대납할 수 없다.<신설 2016.5.27>

제17조(수업료 등 납부) ① 계약학과 등의 학생 납입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납입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업체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로부터 직접 납부 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대납할 수 없다.<신설 2016.5.27>

제18조(계약학과 등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 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등에 재학하는 학생은 계약학과 등의 교육을 위탁받은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아 과정 이수를 완성 한다.

②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학생이 계속 수학을 원할 경우 산업체 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운영, 교육부 계약학과 운영요령을 준용한다.<개정 2016.5.27>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8. 3.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1. 7. 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2. 12. 2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3. 12. 4)

4-10-3-3 계약학과 등 운영 규정

부 칙(2016. 5. 2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